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용호 의원(찬성자 : 23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2226 호

다. 발의일자 : 2024. 10. 16.

라. 회부일자 : 2024. 10. 18.

2. 제안이유

가. 지하개발사업으로 유출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하수처리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 할 필요가 있음.

나. 이에 유출지하수 이용을 촉진하고자 신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 대상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신규로 설치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.

(제34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하수법」 제9조의2(유출지하수의 이용 등)

나. 예산조치 : 원안(비용추계서) 참조

다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24. 10. 23. ~ 10. 27.) 결과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유출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부하 및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현행 구청장이 신규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재정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 조례(이하 “조례”)」 제34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([표 1] 참조)함으로써 신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지원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코자 하는 것임.

[표 1] 개정안 주요골자(안 제34조제1항)

현행	개정안
제34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,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u>단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.</u>	제34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,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■ 서울시 유출지하수 발생 및 활용 현황

- 서울시 관내 유출지하수 발생 및 이용 내역을 살펴보면, 2023년 기준으로 지하철역, 전력구, 통신구, 건축물 등에서 하루 218,524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고, 그중 62.6%인 136,802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([표 2] 참조).

[표 2] 서울특별시 관내 유출지하수 발생 및 이용 현황

(’23년 기준, 톤/일)

구 분	계	지하철	건축물	전력구	통신구	터널 등
발생량	218,524	127,062	51,332	13,669	12,026	14,435
이용량	136,802 (62.6%)	105,747 (83.2%)	6,847 (13.3%)	11,485 (84.0%)	9,121 (75.8%)	3,602 (25.0%)

- 이중 하천유지용(118,249톤/일)으로 가장 많이 활용(86.4%)되고 있고, 그 다음으로 수경시설, 건물용수, 조경용수, 도로청소 순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([표 3] 참조).

[표 3] 서울특별시 관내 유출지하수 활용 현황

(’23년 기준, 톤/일)

구분	계	하천 유지용수	도로청소	조경용수	수경시설 인공함양	건물용수	기타
계	136,802 (100%)	118,249 (86.4%)	149 (0.1%)	1,671 (1.2%)	11,063 (8.1%)	2,739 (2.0%)	2,931 (2.1%)
지하철	105,747	93,304	66	0	9,649	203	2,525
전력구	11,485	11,470	15	0	0	0	0
통신구	9,121	8,091	0	0	1,030	0	0
건축물	6,847	2,188	68	1,671	384	2,536	0
터널 등	3,602	3,196	0	0	0	0	406

- 한편, 활용되지 못하고 하수 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유출지하수는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약 3,270만톤으로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에 부하가 되고 있으며 연간 약 397억원에 달하는 처리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손실도 야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겠음.

[표 4]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 현황

(’23년 기준)

하수도 유입량	하수도 사용료	하수도 납부액	하수처리 원가	하수 처리 비용
3,270만톤/연	400원/㎥	131억원/연	1213.5원/㎥	397억원/연

■ 검토의견

- 안 제34조제1항은 구청장이 신규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여 재정지원 대상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,
 - 과거 2019.12월 본 조례 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7418호, 2019. 12. 31., 일부개정) 당시 현행 조례 제34조제1항에 ‘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신규 설치’를 재정지원 대상으로 신설하면서 같은 항 단서로 “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”를 함께 규정했던 것인데,
 - 그동안 상위법령인 「지하수법(이하 “법”）」에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지원 근거가 없다가 지난 2023.1월 법 제9조의2제7항과 제8항¹⁾이 신설(법률 제19170호, 2023. 1. 3., 일부개정)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조치임.
- 현재, 환경부가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해 「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(안)(이하 “지침”）」을 마련

1) 「지하수법」 제9조의2(유출지하수의 이용 등) ① - ⑥ (생략)

⑦ 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⑨ (생략)

하여 '25년부터 국고보조금을 편성(약 4억 19백만원)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과,

- 유출지하수가 민간 부분에서도 상당량 발생([표 5] 참조)하고 있고, 공공 부분이 발생량 대비 이용률이 77.7% 수준인 것에 반해 민간 부분의 경우 13.3%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 부분의 이용률 제고 차원에서 재정지원 대상을 민간에까지 확대 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음.

[표 5] 공공·민간 유출지하수 발생 및 이용 현황

(’23년 기준, 톤/일)

구분	발생량 (톤/일)	이용량(톤/일)						
		합계 (이용률)	하천 유지용수	도로청소	조경용수	수경시설 인공함양	건물용수	기타
공공	167,192	129,955 (77.7%)	116,061	81	0	10,679	203	2,931
민간	51,332	6,847 (13.3%)	2,188	68	1,671	384	2,536	0

- 한편, 향후 재정지원 외에 자치구와 민간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임.
- 참고로, 본 개정안의 비용추계 결과([표 6] 참조)를 살펴보면, '25년부터 '30년까지 총 23억 4천만원, 연평균 4억 6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, 이는 국비 50%, 시비 20%, 구비 20%, 민간 10%로 매칭하여 사업을 할 경우를 예상하여 산정한 것으로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것임.

[표 6]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제34조제1항(재정지원)	33,504	576,800	576,800	576,800	576,800	2,340,704
	소계(a)	33,504	576,800	576,800	576,800	576,800	2,340,704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비용(a-b)		33,504	576,800	576,800	576,800	576,800	2,340,704